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목 차>

1.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종사의 제한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작 성 자	이름	임대한
	담당부서 (과)	생활물류정책팀		직급	주무관
	국장	김근오		연락처	044-201-4157
	과장	조태영		이메일	rurunolja@mail.go.kr

2024. 11. 04. 작성

물류정책관

성명 김근오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종사의 제한								
	2.규제 조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3.위임법령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9조의2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4.11.08~2024.12.18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이하 배달업) 특성 상 종사자가 소비자의 자택, 성별을 알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 성범죄 등 강력범죄 경력이 있는 자의 배달업 종사를 제한할 필요성 대두								
	7.규제내용	성범죄 등 강력범죄 경력이 있는 자의 배달업 종사 제한 기간 규정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배달업 종사자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종사자</td><td>약 60만명</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종사자	약 60만명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종사자	약 60만명								
9.규제목표	성범죄 등 강력범죄 경력이 있는 자의 배달업 종사를 제한하여 국민 안전 확보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제14조의2(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종사의 제한) 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20년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 제5조의9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1조에 따른 죄: 20년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제4항에 따른 죄: 6년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에 따른 죄: 20년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8호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10년 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2항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8호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15년 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 10년 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제2항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 15년 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현 행	개 정 안
	다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 4년 1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제2항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 6년 1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각 호에 따른 죄: 2년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20년 1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20년

I. 규제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배달 종사자와 소비자의 대면 가능성이 높은 배달업 환경에 따라 강력 범죄 전력이 있는 배달 종사자의 종사 제한 필요성 제기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소비자와 대면 가능성이 높은 기타 업종(택배, 택시 등)과 동일한 종사 제한 기간 설정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배달플랫폼업계	'24.7.25., 서울, 간담회	이견 없음	개정안 추진

3. 규제목표

- 강력범죄자의 배달업 종사를 제한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범죄발생 억제 기대효과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법률에서 정한 20년의 종사제한 기간 범위 내에서 규정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해외 사례 없음

○ 타법사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의2, 시행령 제4조의10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3항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피규제자는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종사자 및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사업자로서, 종사자 측은 계약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으나, 업체 측이 계약을 거부할 것이므로, 규제 준수가 이행될 것으로 판단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국토교통부 및 경찰청(범죄경력조회시스템 관리기관) 인력을 활용 시 관리감독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재정적 집행가능성

재정 소요 없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적정한 배달업 종사 제한 기간 마련을 위해 전문기관(법제연구원) 연구용역과 관계기관(경찰청) 및 이해관계자 협의를 진행

2. 향후 평가계획

소화물배송대행 인증사업자는 100% 범죄경력 확인절차를 시스템화 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

3. 종합결론

피규제자(강력범죄 경력 배달 종사자)의 반발이 있을 수 있으나, 국민 안전을 위해 법정 기한 내에서 규정된 적정한 규제로 판단됨